● 제32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44)

2024. 2.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644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일: 2024. 2. 5.

다. 회 부 일: 2023. 2. 7.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위임 및 위탁)에 근거 민간위탁 추진, 지역보건 법 시행령 제 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 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재위탁)

3. 주요내용

가. 사업 목적 및 목표

○ 사업 목적

- 만성질환예방·관리에 대한 지속적 대시민 홍보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고혈압·당뇨병 건강관리 활성화로 환자 자가관리능력 향상
- 보건소사업 기술지원, 담당인력 교육 등 만성질환 관리수준 향상 도모

○ 사업 목표

		평가지표 (%)	2022년	2024년	자료원
목 표	장기목표: 고혈압・당뇨병의 합병증 감소-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증가(표준화율)-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증가(표준화율)	(서울) 54.0% 44.5%	(서울) 55% 45.5%	2022 지역사회 건강통계	
	 중기목표: 고혈압・당뇨병의 관리수준 향상 -고혈압 약물치료율(≥30) 증가(표준화율) -당뇨병 치료율(≥30) 증가(표준화율) 	(서울) 90.5% 89.5%	(서울) 91.0% 90.5%	2022 지역사회 건강통계	

- 장기목표: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 · 서울시민 중 고혈압·당뇨병 유병자의 합병증 예방
- 중기목표: 고혈압·당뇨병 관리수준 향상(치료율, 조절률, 교육이수률 등)
 - ·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 향상 및 건강형태 개선
 - · 서울시민 중 고혈압·당뇨병 유병자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강화
- 단기목표: 고혈압·당뇨병의 인식률 증가
 - · 고혈압·당뇨병 표준교육 질 향상 및 인식도 향상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 · 고혈압·당뇨병 표준교육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전문강사 역량 강화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 8개월 (2024.5.~2026.12.31.)
 - 위탁업무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강화
 - 자치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질 강화지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수준 개선 홍보
 -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 지원등
 - 소요예산 : 69백만원
 - 현위탁기관 17백만원('24.1.~'24.3.)
 - 재위탁기관 52백만원('24.5.~'24.12)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및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일자	연 혁
2008.8.1	민간위탁1차 협약(2008.8.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09.4.1.	민간위탁2차 협약(2009.4.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10.7.1.	민간위탁3차 협약(2010.7.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11.7.27.	민간위탁4차 협약 (2011.7.27.~ 2013.2.10.),강북 삼성 병원(2년)
2013.6.1.	민간위탁운영 5차 협약 (2013.6.1.~2014.12.31.)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2년)
2015.5.1.	민간위탁운영 6차 협약(2015.5.1.~ 018.4.3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2018.5.1.	민간위탁운영 7차 협약(2018.5.1.~2020.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2021.1.11.	민간위탁운영 8차 협약(2021.1.11.~2023.12.3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2023.11.20.	민간위탁 운영 협약 연장(2021.1.11.~2024.3.30.),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라.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의 주요 위탁사무는 심뇌혈관질 환 인식수준 개선 홍보사업, 고혈압·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구축, 보건소 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서비스 질 강화,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 지원에 관 한 사항 등이며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통하여 시민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을 맡기고자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 공개모집·선정을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23조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3.5. :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재위탁)

- 2023.7.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3년 제4차)

○ 향후계획

- 2024.2. : 시의회 동의

- 2024.3.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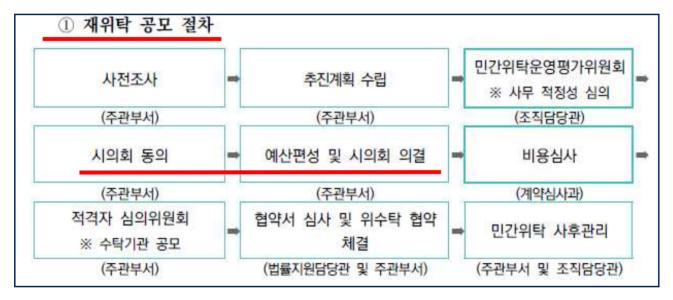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조유희 (☎ 2133-7758)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 동 '서울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 탁 동의(안)은 기존에 동 사무를 수탁·운영해오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 력단'과의 최초 약정 '수탁기간(2021.1.11.~ 2023. 12.31.)' 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 '시의회 동의'를 사 전에 받은 후 동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 예산을 편성·의결해야 했음.

〈 출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 27)



- 그러나, 집행기관은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23. 8. 28.~ '23. 9. 15.)에 재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할 사항을 재위탁 '보고(안)'1)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부득이 집행기관은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동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기간'을 '23. 11월에 일시 연장('24.1.1.~'24.3.30.) 하였음.
 - ※ 최초 협약기간: '21.1.11.~ '23.12.31. ▶ 연장 협약 기간: '24.1.01. ~ '24.03.30.

¹⁾ 제320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상임위 업무보고(p. 103 참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1조(협약체결 등) ④ 시장은 <u>불가피한 사유</u>가 있는 경우 <u>수탁기관과 협</u>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일시연장'에 따라 동 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지침」상 "위탁기간이 2024년에 3월에 종료되어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에 상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동의(안)에 해당하게 되었음
- 그리고 이에 따라 동 사무 민간위탁 예산편성 및 의결이 2024년 본 예산('23. 12월)²⁾에 먼저 반영되고, 본 재위탁 동의안의 경우는 그 보다 늦은 제322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조례'제2조제4호 및 제4조의 3제1항에 의거해 제출되었음.

〈 출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 65) 〉

5) 예산편성(주관부서)

※ 의회의 동의 후 민간위탁 예산 편성이 가능(조례 제4조의3 제5항)하나, 위탁기간이 다음 연도 중에 종료되어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당해 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상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후 시의회 동의안 제출 가능(예산편성이 사전절차에 해당 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개정 2021.3.25., 2021.12.30.>

2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개요

○ 기존 민간위탁 추진 경위

일자	연 혁
2008.8.1	민간위탁1차 협약(2008.8.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09.4.1.	민간위탁2차 협약(2009.4.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10.7.1.	민간위탁3차 협약(2010.7.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11.7.27.	민간위탁4차 협약 (2011.7.27.~ 2013.2.10.),강북 삼성 병원(2년)
2013.6.1.	민간위탁운영 5차 협약 (2013.6.1.~2014.12.31.)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2년)
2015.5.1.	민간위탁운영 6차 협약(2015.5.1.~ 018.4.3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2018.5.1.	민간위탁운영 7차 협약(2018.5.1.~2020.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2021.1.11.	민간위탁운영 8차 협약(2021.1.11.~2023.12.3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2023.11.20.	민간위탁 운영 협약 연장(2021.1.11.~2024.3.30.),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위탁유형 : 사무형

- 구 분:재위탁

- 위탁기간 (예정) : 2년 8개월³⁾ ('24. 5월 ~ '26. 12월.)

- 소요예산('24년) : 69,412천원 (국비 50% : 지방비 50%)

연 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민간위탁금	○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 69,412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371,760천원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형 (재위탁)	공모 예정	3년 이내	적정

^{3)「}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 위탁기간은 <u>3년 이내</u>로 한다.

'서울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의 주요 사무는 자치구 (기초자치단체)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단위에서 통일성 있게 총괄할 필요성이 있는 ①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② 인식수준 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③ 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④ 심뇌혈관사업 총괄 조정 및 자체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임.

〈출처: '23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

주요 사업	세부 추진내용	사업대상	
민간자원 개발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지원	서울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인식수준 개선	중앙 개발 심뇌혈관질환 홍보 컨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활동 지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담당자	
교육홍보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주간 대시민 행사 개최 (25개 자치구 보건소 참여 합동 캠페인 포함)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	
	보건소 사업담당자 기본교육과정 운영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담당자	
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만성질환관리 전문강사 보수교육 운영	서울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 원단 소속 만성질환전문강시	
	만성질환관리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담당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간담회 개최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담당자	
심뇌사업 총괄 조정 및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담당자	
자체 평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워크숍 개최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담당자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표준교육 인원 모니터링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담당자	
지역특화사업 지원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 운영방안 검토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참여의원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홍보물 및 안내책자 수정 인쇄 및 배포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	

○ 동 '서울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의 주요 사무는 '22년 기준 전체 사망원인 中 2위(심장질환) 및 5위(뇌혈관 질환)⁴)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 위탁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의 '특수한 의학적 전문지 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라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 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관련 '네트워크 구축', '인식개선 및 홍보',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운영', '사업 총괄 조정, 기술 지원 및 평가 수행' 같은 세부적 사무들 역시 '전문적인 의학지식 및 정보'의 기반 아래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그 예방 및 관리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무라 판단됨.
- 그리고 이와 반대로 동 사무가 심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될 경우 잘못된 지식 또는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 질 수 있음.
- 따라서, 동 사무는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무라는 점에서 민간 등의 전문성 있는 의학적 지식 및 정보가 반드
 시 필요한 사무라 판단됨.
- 그리고 동 사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법령상 서울특별시장(시·도지사)이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⁴⁾ 출처: 질병관리청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할 수 있는 사무라 판단되며,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2023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안내(p.10)에서도 역시 앞서 언급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시·도가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동 사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라는 개별법령에 '민간 위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 사무를 '보건의료 관 련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안내(p.10)- 질병관리청〉

- 사업대상 질환
 -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 심뇌혈관질환 : 뇌졸중, 심근경색 등
- 사업대상: 시도 지역사회 주민전체(고위험군, 환자 및 환자 가족 등)
- 사업수행주체 : 광역자치단체(시도)
- 사업방식 :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위탁 운영 등
 - 시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근거하여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가능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 다만, 집행기관이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서울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근거로 명시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위임 및 위탁)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며, '서울특별시장'이 시장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무'를 '민간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됨.
- 왜냐하면, 모 법률 및 동 법 '시행령(대통령령)'을 종합할 때, 동 조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사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의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근거이기 때문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u>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u>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u>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u>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u> 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u>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u>의 분석·예측
-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 · 심의 및 선정
-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u>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u>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② <u>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u>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 조에 따른 <u>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u>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 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종합의견

- 동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당초 약정된 '수탁기간(2021.1.11.~ 2023. 12.31.)'이 2023년 12월 31일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이전에 '시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 동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예산을 편성·의결해야 했음.
- 그러나, 집행기관은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23. 8. 28.~ '23. 9. 15.)에 재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할 사항을 재위탁 '보고(안)'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부득이 기존 수탁기관과의 일시적으로 기간 연장을할 수 밖에 없었음. 그리고 이에 따라 본 재위탁 동의(안)은 동 사무의 2024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및 의결 시점(23년 12월) 보다 늦게 제32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음.
- 동 '서울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의 주요 사무는 22년 기준 전체 사망원인 中 2위(심장질환) 및 5위(뇌혈관 질환)를 차 지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특수한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라 판단됨
- 이와 더불어, 동 사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라는 개별법령에 '민간위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 사무를 '보건의 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의 특성과 개별법령에 위탁 관련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점을 검토할 때 동 사무는 전문성 있는 우수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 다고 사료됨.

문 의 처

신현태 입법조사관 (02-2180-8145)